

제 1186 호
1985.9.27

발행인 : 서울특별시 시장 업무보원
편집인 : 공보관 이광우
전화 : 731-6111-3
주소 : 서울특별시 종합발전실
전화 : 735-8937

시보

차례

◎ 고 시	
제 641 호 : '85 서울특별시 제 1 회 추가경정예산고시	2
제 642 호 : 마포로제 1 구역 제 26 지구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	2
제 643 호 : 도시계획시설 (시장) 결정고시	2
제 644 호 : 도시계획시설 (가스공급설비) 결정 및 지적승인가고시	3
제 645 호 :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	3
◎ 공 고	
제 575 호 : K, S 표시 허가취소공고	4
제 579 호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 완료공고	4
◎ 사 령	
◎ 정 정	

공 람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41 호

'85 서울특별시제 1 회추가경정예산고시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85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 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- 일반회계 1,026,323 백만원
- 특별회계
 - 하수처리장비 : 112,200 "
 - 유료도로비 : 11,312 "
 - 의료보호기금 : 8,105 "
 - 올림픽사업비 : 183,755 "
 - 공과금통합정수 : 1,385 "

1985. 9. 27.
서울특별시장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42 호

마포로제 1 구역제 26 지구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90호(83.9.23)로 사업시행 인가된 마포로 제 1 구역 제 26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2조 및 동

법시행령 제 5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(시행기간연장)하고 동법 제 1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1985. 9. 27
서울특별시장

가. 변경인가 내용

○ 시행기간 :

기정 : 83.9.23 - 85.12.31

변경 : 83.9.23 - 87.12.31

나. 변경사유 : 토지매수 협의 지연 및 건축공사 착공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

다. 기타사항 : 변경전 인가내용과 동일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43 호

도시계획시설(시장)결정고시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을 도시계획법 제 12조제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제 1항에 의거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9. 27.
서울특별시장

<p>○ 결정조서</p>				
구 분	시설명	위 치	규모 (㎡)	비 고
신 설	시 장	강동구 명일동 347-3 외 1 필지	1,406.2	
<p>○ 결정도면 :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</p>				
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644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가스공급설비) 결 정 및 지적승인 고시</p>		<p>12조 제 4 항 및 제 13조 제 1 항과 같은법시행령 제 9조 제 4 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강남구청 및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5. 9. 27. 서울특별시 장</p>		
<p>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(가스공급설 비) 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 1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 제 1 항 에 의거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</p> <p>○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</p>				
구 분	시설명	위 치	규모 (㎡)	비 고
신 설	가스공급설비	강남구방배동산 100-3 일대	3,005.5	가스발브실
신 설	"	구로구독산동 948 일대	3,975.7	"
<p>○ 결정 및 지적승인도면 :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</p>				
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645 호</p> <p>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</p> <p>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 행령 제 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5. 9. 27. 서울특별시 장</p>		<p>1. 사업 명 : 민영주택건설사업</p> <p>2. 사업주체 : 동대문구상봉동 137-1 신우주택건설(주) 박신일</p> <p>3. 사업시행 위치, 면적 및 규모 가. 위치 : 도봉구방학동 318-44 외 6필지 나. 면적 : 6,370 ㎡ 다. 규모 : 연립 3층 6동 87가구</p> <p>4. 사업시행기간 : 85.9 - 86.9</p>		

5.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								
구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기정	소로	3	1	6m	98m	방학 317-9	방학 632-1	폐지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575 호

K.S 표시허가취소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K.S 표시 허가 취소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.

1985. 9. 27
서울특별시장

1. 허가번호: 제 1001호
2. 허가일자: '74.11.28
3. 업체명: (주)신명전기
4. 소재지: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번지
5. 대표자: 김희목
6. 규격번호: K.S.C 4202
7. 규명: 저압 3상 유도 전동기
8. 종류등급
 개방형 보통농형 4극: 0.4 kw,
 0.75 kw, 1.5 kw, 2.2 kw, 3.7 kw
 개방형 특수농형 4극: 5.5 kw,
 7.5 kw, 11 kw, 15 kw

9. 처분사유: 허가증 가진 반납
10. 처분내용: K.S 표시 허가취소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579 호

도시계획사업(시장)시행완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306호(82.8.6)로 시행허가하여, 동고시 제 435호(82.10.27) 및 동고시제 440호(83.8.26) 및 동고시제 29호(84.1.17) 및 동고시제 453호(85.7.9)로 시행변경허가된 영등포구 신길동 259-4 외 5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(시장)시행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조의 2 및 동법 제 85 조와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2. 관계서류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9. 27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59-4 외 5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
사업(시장)신동시장현대화신축
공사

다. 사업의 규모 : 대지 937㎡
지하 1층, 지상 3층, 건축면적
458.85㎡, 연면적 1,877.7㎡

라. 사업시행자 : 영등포구신길동 259-4
신동시장㈜ 대표이사 피정환

마. 사업시행기간 : 84. 9.24 ~
85. 9.20

바. 위치도 및 준공도면 : 별첨
(생략)

사 령

◎ 1985년 9월 27일

보건사회국 의학과 지방간호기과 류성자
자유중국 해외연수파견(가족제회분야)
파견기간 : '85.9.30 ~ 10.6 (7일간)

◎ 1985년 9월 28일

발령제 361 호

성명	발령부서	현부서	직급
라기덕	올림픽준비단	마포구 총무과	지방행정주사보
금창열	올림픽준비단파견근무 ('85.9-'86.3)	영등포구 총무과	"
최덕준	종로구	올림픽준비단문화담당관	"
한근수	중구	산업경제국 상공과	"
박원욱	산업경제국	중구 산업과	"

◎ 1985년 9월 26일

발령제 362 호

성명	발령부서	현부서	직급
홍법식	성북구건설국장지방서기관	성북구 건설국장 직대	지방행정사무관
최영태	은평구 도시정비국장 지방서기관	은평구 도시정비국장 직대	"
전희상	강서구 도시정비국장 지방건축기정	강서구 도시정비국장 직대	지방건축기과

◎ 1985년 9월 27일		발령제 363호	
성명	발령부서	현부서	직급
박재현	행정주사보	강서구 산업과	지방행정주사보
강성환	지방행정주사보	강서구 신정2동	행정주사보
서울특별시		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정 정</div>			
<p>1. 시보 제 1173호 (85.9.10) 게재사항중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5. 9. 27. 서울특별시</p> <p>가. 게재사항 서울특별시 조례 제 2024호,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중 개정조례</p> <p>나. 정정내용</p>			
제 5 조 (중매인의 최저거래금액)	정	오	비 고
	· 건어 : 4 천만원	· 건어 : 2 천만원	